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

###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 락 처	(사업장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b>김국세</b>		(주소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b>000000-0000000</b>		(휴대전화번호) <b>010-0000-0000</b>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b>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00, 수송아파트 101-101</b>		

###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부동산임대	주종목	주택임대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2019.1.1.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85㎡	타가 면적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원	월세 (차임)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허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통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 ]여 [ ]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 ]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 ]여 [ ]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메모:1**  
주택임대업 업종코드 701101(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701102(일반주택), 701103(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중 선택  
※ 장기임대(701103, 701104)는 국민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메모:3**  
부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메모: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체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란

**메모:2**  
공동사업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3페이지의 공동사업자 명세 작성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부"에 체크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재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소매업, 과세유출증상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김국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장(단체)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00, 수송아파트 101-101**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b>300,000,000원</b>	<b>2019. 1. 1.</b>	<b>김국세</b>	<b>000000-0000000</b>	<b>50%</b>	<b>본인</b>	
		<b>나성실</b>	<b>000000-0000001</b>	<b>50%</b>	<b>배우자</b>	

-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고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사유	